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42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권향엽・이재강・민병덕

박홍배 • 이병진 • 양부남

한정애 · 주철현 · 민형배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부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성을 검사·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2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구동축전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		
인증 절차 등) ① (생 략)	인증 절차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2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			
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			
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			
<u>설></u>	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시험		
	은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실시되도록		
	<u>하여야 한다.</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